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3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오영환·김남국·양정숙

최혜영 • 이재정 • 김홍걸

정청래 · 홍정민 · 김민철

임호선 · 전혜숙 · 양향자

강득구 · 임오경 · 장경태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9신고접수부터 구급 출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유 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법 등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적기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는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소방청장등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물놀이, 그 밖에 활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명령 권한이 없어 수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방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등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4항 신설), 119구급 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보고 및 전파, 재 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 무를 포함하며(안 제10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소방청장등에 게 수난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 물놀이 등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안 제30조제2항 신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구급대가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기(適期)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감염병 환자(의심환자를 포함한다)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 6.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에 대한 의료상 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물놀이 등 일시 정지 명령) 소방청장등은 내수면(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 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에서 수난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는 수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또는 수상레저활동(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을 하는 사람과 하려는 사람에게 그 활동을일시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1항 중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및 의료기관"으로, "제15호"를 "제15의2호"로,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정보를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 1. 보건복지부의 정보시스템
- 2. 질병관리본부의 정보시스템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 제30조에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기존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제15조의2에 따른 일시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0만원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③ (생 략)	①・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u>구급대가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u>				
	기(適期)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				
	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				
	위를 정할 수 있다.				
<u><신 설></u>	⑤ 제4항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				
	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의 설치・운영 등) ① (생 략)	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2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감염병 환자(의심환자를 포함				
	한다)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신 설>

③ ~ ⑤ (생 략) <신 설>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 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의료기관-----

및 전파

- 6.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물<u>놀이 등 일시 정지</u> 명령) 소방청장등은 내수면(하 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 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 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에서 수난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는 수 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또는 수상레저활동(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 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 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을 하는 사람과 하려는 사람에 게 그 활동을 일시 정지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 리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및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 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이 조에 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로 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 감염병의심자-----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③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 제15의2호----

-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 에 관한 정보를 소방청장등에게 통보 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 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 1. 보건복지부의 정보시스템
- 2. 질병관리본부의 정보시스템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 템
-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 스템
- 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5조의2에 따른 일시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②</u> 저	<u> 1항</u>	에 따	른 과	태료	는	대	통
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근	4	소
방청	장등	또는	관계	행?	정기	관	의
장이	부괴	- · 징	수한디	7.			

③ 제1항과	제2항